

# 「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6. . .  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3조제6호 중 “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”을 “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”으로 함.

# 「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 한 수정안

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**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**”을 “**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**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) <u>시장</u> 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, 새마을사업 추진,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, <u>기타</u>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	제3조(지원) <u>구미시장</u> (이하 “ <u>시장</u> ” 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3조(지원) (개정안과 같음)

원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

4.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

5. (생략)

6. 새마을알뜰벼룩장터 운영

7. ~ 9. (생략)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회계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교통안전, 환경정화, 문화예술 등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

4.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5. (현행과 같음)

6.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사업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준용) -----  
-----  
- 「구미시 사무위탁조례」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5. (개정안과 같음)

6.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준용) (개정안과 같음)

관리에 관한 규칙」  
의 관계규정을 준용  
한다.

-----  
-----.